

[서식 예] 제3채무자의 진술서

진 술 서

사 건 20○○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채권자 ○○○

채무자 ◇◇주식회사 제3채무자 ◈◆주식회사

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진술최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.

아 래

- 1.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
 - 제3채무자는 위 채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,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목록 기재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. 다만, 위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, 그 임차보증금은 금 50,000,000원, 계약기간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까지임.
- 2.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
 - 없음
- 3.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
 - 없음
- 3.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
 - 없음

20○○. ○. ○. 위 제3채무자 ◈◈주식회사 대표이사 ◈◈◈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- ·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음.
- ·제3채무자의 진술서에서의 인정은 청구의 인낙(민사소송법 제 220조)과 같은 의미는 아님.
- 제3채무자의 진술의 효력
- ·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 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,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며(,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압 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),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음(압류채권이 존 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). 다만, 특별한 경우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 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재판 외의 자백이 되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.
- ·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음.